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8 - 12호

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공고

“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” 수립과 관련하여 『건축법』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(☎560-472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8. 01. 0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**제한목적:**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확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(前) 무계획적인 건축물 입지 시 경인고속도로변 및 주변지역 “애인(愛仁)가로 및 특화가로” 조성에 문제가 있어 지구단위계획 확정시까지 건축허가제한
2. **주민의견청취결과 :** 의견없음
3. **건축위원회 심의결과 :** 원안가결
4. **제한내용**
 - 가. 제한기간: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간(단,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일까지)
 - 나. 제한대상 건축물의 용도(『건축법 시행령』별표 1)
 - 1) 제1호 단독주택 중 나목 다중주택
 - 2)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거목 다중생활시설
 - 3) 제15호 숙박시설 중 라목 다중생활시설
 - 다. 제한항목: 건축허가, 착공
 - 라. 제한대상 구역의 위치·면적: 서구 가정동, 석남동, 가좌동 일원 780,718㎡
 - 마. 제한대상 구역의 경계(관계도면): 게재생략
 - 바. 제한근거: 『건축법』 제18조 제2항(건축허가의 제한 등)